KOSHA GUIDE

C - 59 - 2022

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지붕 위 작업안전 일반기준

4.1 안전에 관한 일반사항

모든 지붕작업에서는 안전한 작업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. 지붕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작업을 위한 방법, 필요 장비, 작업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.

- (1) 추락 방지책, 필요장비
- (2) 지붕 아래에 있는 작업자와 일반인에 가해지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
- (3) 현장 감독자 임명 및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담당자 지명
- (4) 안전작업을 위한 훈련
- (5) 안전작업을 위한 작업방법 변경
- (6) 건강상 위험요소 통제방법
- 4.2 안전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
지붕 위에서 작업 시 안전 시설이나 장비는 다음과 같다.

- (1) 발판, 사다리, 이동식 접근 장비
- (2) 고정식 및 이동식 발판 타워